

디자인 제도 및 등록요건

김 시 호 교수

메일: jurist4024@gmail.com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Con tents

- 디자인 제도의 목적과 개념
- 기자인 등록요건
- 3 디자인 출원 및 심사
- 4 디자인의 특유제도

Chapter.

제도의 목적과 개념



뽀로로 캐릭터



뽀로로 인형



실제 자동차



모형 자동차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
- 디자인 창작 장려
- 산업발전 도모





디자인의 정의(P.171-174)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디자인의 물품 독립 거래
- 디자인의 형태성 고정 형체
- 디자인의 시각성 식별
-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

물품성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부분디자인제도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현미경에 의한 식별 등 제외)

심미성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물품성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 : 합성물의 구성각편(예외: 조립완구)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 양말뒷굽, 전화기의 버튼부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기체,액체,전기,광,열,음향(예외:네온관)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시멘트,설탕

부동산: 빌딩. 아파트

(예외:방갈로,공중전화박스,이동판매대,방범초소,승차대,이동화장실,조립가옥)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 손수건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

* 1물품과 다물품: 1조의 물품, 레고, 용기와 내용물

* 완성품과 부품: (카메라 렌즈,자동차 휠) 부품디자인을 완성품보다 늦지 않게 출원



- *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
- * 제2조1호: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 * 제2조1호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심사기준: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3) 한벌의 한글/영문자/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한자 글자꼴일 것.
- * 제44조2항: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

형상 :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입체적/평면적

모양: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임의적. 투명디자인

색채: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

무채색/유채색/금속색/투명색. 무채색 생략시 설명에 기재

문자: 정보전달만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

예) 신문, 서적의 문장부분 / 성분표시, 사용설명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

한벌의 글자꼴을 물품의 정의에 포함(2005년 디자인보호법).

동적디자인 - 고무호스, 접이식 의자

형상만의 디자인 - 침해여부, 이용관계 성립여부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현미경에 의한 식별 등 제외)

육안으로 식별

- 청각, 후각으로 식별되는 소리, 냄새
- 분상물, 입상물의 1단위와 같이 육안에 의한 식별이 어려운 것 외부에서 포착가능
-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포착할 수 있는 것(광고물 내부구조)
- 피아노와 같이 뚜껑을 열어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도면을 구분해서 작성
- 투명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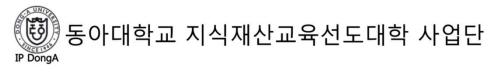
심미성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미감이란?

- 주위환기성설/취미성설/심미성설/미적처리설 심사기준(소극적 규정)
- 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은 것,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 '외관성 변화가 그 물품의 기능을 좋게 할 경우 변화에 따른 미관도 좋게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 삭제. 기능미 보다는 장식미적 접근 (심사기준)





Chapter.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 등록 요건(P.178-181)

공업성 :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의 양산이 가능할 것

- 자연물이나 순수 미술작품 등은 등록 불가

신규성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
- * 신규성상실의 예외제도 : 창작성에도 적용

창작성 :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부터 용이한 창작이 아닐 것

- 간단한 형상이나 모양 : 단순한 육면체, 원기둥
-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전형적인 축구공, 잠실운동장 등)







일품제작용 저작물 : 회화, 조각 등 순수미술 ex) 캐릭터(부분디자인)

자연물: 분재, 새의 박제표본 (예외: 악어가죽지갑)

서비스 디자인: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 만든 꽃 모양

부동산(예외: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조립가옥 등)

구체성을 결한 디자인(개정으로 인해 무효사유에 해당됨)

- 디자인의 설명이 불충분
- 사용목적, 방법, 상태가 불분명
- 부분디자인의 경우 부분을 명확히 도시하지 않은 경우
- 도면이 불충분한 경우(단,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 모양과 혼동되지 않게 선,점,농담 사용)





공지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공연실시 : 공지상태에서 실시

반포된 간행물: 공보, 서적, 잡지, 신문, 카탈로그, 팜플렛, CD롬, 마이크로필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 : 웹사이트주소, 화면 첨부

- * 완성품과 부품/ 합성물과 구성각편/ 한벌물품/ 동적디자인/ 부분디자인
- 거절, 정보제공, 이의신청(무심사), 무효사유



신규성 :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전기통신회선

"<u>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 전기통</u> 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33조 1항 2호)

- 공지 예외: 6개월 이내에 주체적, 객체적 요건 만족하여 출원서에 취지기재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 제출 (단, 반의사공지)

*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8조 주장 기회 부여



창작성 :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수 있는 디자인"



1.주지형태

삼각형,사각형,매화형,누에고치형/기둥,통,홈통,뿔대,정다면체/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

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卍무늬 등 흔한모양/

2. 자연물(새, 물고기), 유명저작물(김홍도의 풍속도),

유명건조물(남대문, 자유의여신상), 유명경치(백두산천지, 금강산),

운동경기(올림픽경기)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상업적 변형

3. 주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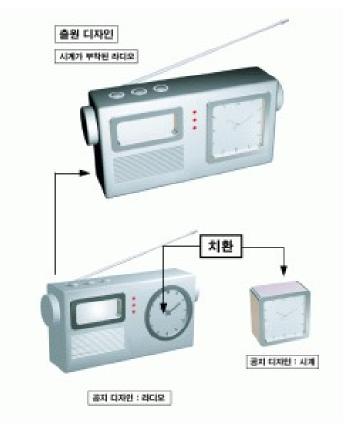
이종물품간 디자인의 전용이 업계의 관행(자동차,비행기 vs 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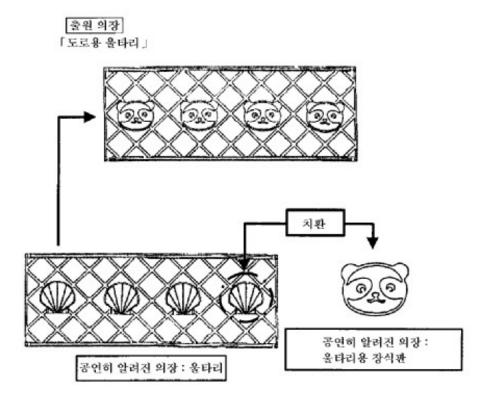
* 단, 새로움 미감, 보는 각도에 의해 특징, 당업계의 상식이 아닌 경우 인정



1. 치환 디자인

치환은 디자인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디자인은 창작성 수준이 낮아 등록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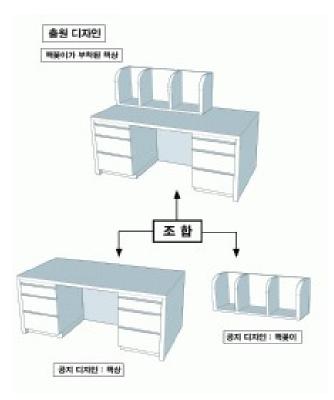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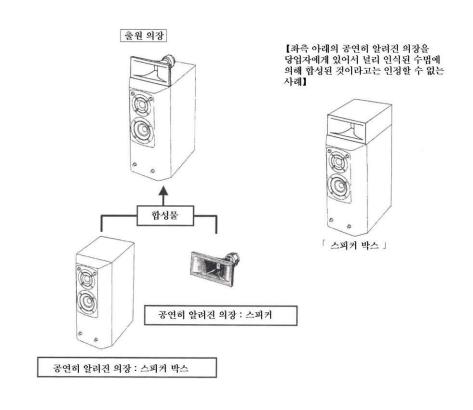




2. 합성물 디자인

합성물은, 복수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을 당업자에게 있어서 널리 인식된 수법에 의해 합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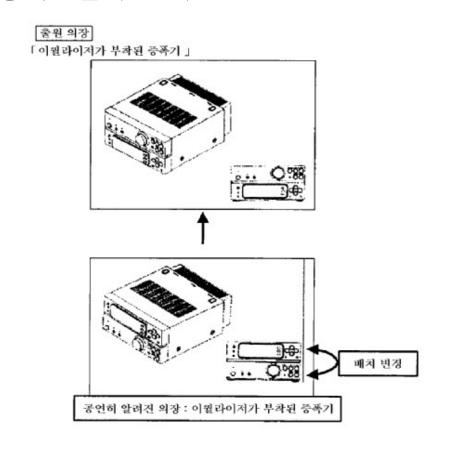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3. 배치 변경에 의한 디자인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의 구성 요소의 배치를 당업자에게 있어서 널리 인식된 수법에 의해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디자인 등록 요건(P.175)-소극적 요건

국내·외의 국기, 훈장,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불가피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국내·외의 국기,훈장,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태극기, 성조기, YMCA, IOC 등















다른 형상, 모양과 결합하여 표현된 경우에도 적용

인륜, 사회정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특정국가, 국민을 모욕하는 것/ 저속, 혐오, 외설스러운 것/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일부에만 포함되어 있어도 적용





화병

벽걸이용 장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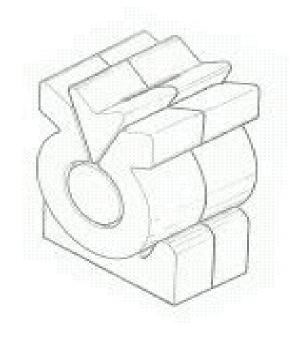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 단, 자기의 상표, 저명하지 않은 경우, 상표적 기능을 못하는 경우 출원시 기준

Ex) 코카콜라 병모양, 농협 마크 모양의 저금통







저금통



필연적 형상(파라볼라 안테나), 준필연적 형상(KS규격품)

* 단, 주목적이 기능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규격봉투)

대체형상/ 표준화된 규격/ 이외의 형상포함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려





Thank You for Listening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